

계룡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하수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(이하 “하수처리시설”이라 한다)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관리·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계룡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위치) 하수처리시설의 위치는 두마면 왕대리 108-2번지에 둔다.

제4조 (관리·운영 등) ①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·위탁사무(내용)·위탁기간·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간 협약서에 의하여 계약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·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 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기관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④수탁기관은 수탁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 (처리시설 개선·보완등) ①수탁기관은 처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·보완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②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처리시설의 개선·보완 및 천

재지변, 민원에 의한 긴급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과 수탁기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7조 (위탁의 해지 또는 해제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1.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
2.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
3.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
4.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
5.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,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.

제8조 (운영지원)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 (주민복지향상) ①수탁자는 수탁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